

「건축구조기준」 개정(안) 검토의견

검토자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류현희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사 유
KDS 41 19 00 : 2021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10. 깊은 기초 10.3 설계 및 상세 10.3.2.1 콘크리트 콘크리트를 강관내부에 타설하거나 또는 기저에 밀실콘크리트로 확대구근을 형성하는 경우, 굵은골재의 최대 크기는 20 mm 이어야 한다. 밀실하게 채워져야 할 콘크리트의 슬럼프값은 0 이어야 한다. <u>(1) 내진갈고리</u> 내진설계범주 ‘C’ 또는 ‘D’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경우, 콘크리트말뚝에 사용하는 후프, 나선 철근 및 타이의 끝은 KDS 14 20 00에 정의된 내진갈고리로 가공하고, 내진갈고리의 끝부분은 구속된 콘크리트코어 속에 묻어야 한다. <u>(2) 콘크리트구조기준의 식</u> 이 장에서 콘크리트구조기준 KDS 14 20	KDS 41 19 00 : 2021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10. 깊은 기초 전반적 수정필요 말뚝기초의 내진상세 적용에 대한 필요성	해당 기준에서 제시된 <u>내진설계범주 “C”와 “D”에 대하여 말뚝기초의 내진상세</u>가 국내실정에 적절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콘크리트 파일을 예로 들면 <u>파일에 내진 갈고리 적용, 이음부 설계 시 초과강도계수적용 또는 말뚝의 공칭강도 이상 적용</u>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IBC를 <u>기반</u>으로 해당 기준이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u>미국은 지하가 거의 없는 구조물이 많으므로 지표면에서 지진하중(횡력)을 저항하도록 파일 설계를 해주는 것이 적절하나, 국내 구조물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를 가진 구조물</u>로써 직접적으로 횡

개 정 안	검 토 의 건	
	수정안	사 유
20(4.3.4)에 따른 콘크리트말뚝의 상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구조기준의 KDS 14 20 80의 식(4.3-2)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10.3 설계 및 상세 10.3.6 말뚝의 이음 10.3.6.1 내진설계범주 ‘C’ 및 ‘D’ 내진설계범주 ‘C’ 또는 ‘D’에 속하는 구조물의 말뚝이음은 다음 중 작은 값을 발현해야 한다. (1) 말뚝의 공칭강도 (2) KDS 41 17 00(6.1)에 따른 초과강도계수를 포함한 지진하중효과에 의한 축력, 전단력 및 모멘트 10.3.8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말뚝 등의 10.3.8.2 비인장 기성콘크리트 말뚝 (1) 최소철근비 종방향 철근은 4개 이상으로 최소철근비가 0.8% 이상 이어야 한다. (2) 내진설계범주 ‘C’ 와 ‘D’ 에서 내진보강 내진설계범주 ‘C’ 또는 ‘D’에 속하는 구조물의		력에 저항하지 않고 횡력에 대한 수평변위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u>내진설계범주 “C”와 “D”</u> (내진설계범주 “B”는 거의 없으므로 내진설계 대상 건물의 거의 모든 건물이 해당됨)의 <u>말뚝 설계 시 중연성도 이상의 내진상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u>으로 판단됩니다. 지하구조물 내진설계도 반응수정계수 3.0으로 보통모멘트골조 정도의 연성을 기대함. 말뚝의 내진상세 적용은 구조적 거동의 측면 뿐 아니라 사회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고가 필요합니다.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사 유
경우, 비인장 기성콘크리트말뚝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보강하여야 한다. 축방향 철근의 최소철근비는 전길이에 대해 1% 이상으로 한다. 횡방향 철근은 직경 9.5 mm 이상의 폐쇄형 띠 철근 또는 나선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횡방향철근의 간격은 말뚝기초판 하부로부터 말뚝 단면 최소치수의 3배 길이 이내에는 축방향 철근 최소직경의 8배 또는 150 mm 중 작은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말뚝의 나머지 전구간에 대해서는 150 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내진설계범주 ‘D’ 에서 추가 내진보강 내진설계범주 ‘D’에 속하는 구조물의 경우는 횡방향 철근은 10.3.9.4.2의 규정도 따라야 한다.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사 유

「건축구조기준」 개정(안) 검토의견

검토자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정석재

개 정 안	검 토 의 건	
	수정안	사 유
KDS 41 10 05 : 2021 (건축구조기준 총칙) 1.1 목적 KDS 41 00 00은 건축법과 주택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에 대한 설계, 검사 및 검증, 설계하중, 재료별 설계방법, 재료강도, 제작 및 설치, 시공, 품질관리 등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및 공작물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및 친환경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KDS 41 10 05 : 2021 (건축구조기준 총칙) 1.1 목적 KDS 41 00 00은 건축법과 주택법, <u>건축물관리법</u>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에 대한 설계, 검사 및 검증, 설계하중, 재료별 설계방법, 재료강도, 제작 및 설치, 시공, 품질관리, <u>해체</u> 등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및 공작물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및 친환경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법 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조항이 삭제되고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건축물관리법 법령 추가 [추가]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제2조(정의) 및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에서 건축물의 유지·점검·보수·보강 또는 해체 시 건축법 제48조 및 제48조의4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라는 규정에 따라 해체도 건축구조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해체 업무 추가 [추가] 해체
KDS 41 10 05 : 2021 (건축구조기준 총칙) 1.2 적용범위 건축법과 주택법 등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등 건축하거나 대수선 및 유지·관리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이하 ‘건축구조물’이라 한다)의 구조체와 부구조체 및 비구조요	KDS 41 10 05 : 2021 (건축구조기준 총칙) 1.2 적용범위 건축법과 주택법 등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등 건축하거나 대수선 및 유지·관리, <u>해체</u>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이하 ‘건축구조물’이라 한다)의 구조체와 부구조체 및 비구조요소, 그	·건축물관리법 제2조(정의) 및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에서 건축물의 유지·점검·보수·보강 또는 해체 시 건축법 제48조 및 제48조의4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라는 규정에 따라 해체도 건축구조기준이

개 정 안	검 토 의 건	
	수정안	사 유
소, 그리고 이들의 공사를 위한 가설구조물 등의 설계·시공·공사감리·유지·관리업무는 KDS 41 00 00에 따라야 한다. 또한, KDS 43 00 00의 특수목적 건축구조물은 이 기준과 KDS 43 00 00의 해당 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리고 이들의 공사를 위한 가설구조물 등의 설계·시공·공사감리·유지·관리업무는 KDS 41 00 00에 따라야 한다. 또한, KDS 43 00 00의 특수목적 건축구조물은 이 기준과 KDS 43 00 00의 해당 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적용되어야 하므로 해체 업무 추가 [추가] 해체
KDS 41 10 05 : 2021 (건축구조기준 총칙) 2. 용어의 정의	KDS 41 10 05 : 2021 (건축구조기준 총칙) 2. 용어의 정의 • 멸실 :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 • 해체 :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	[추가] 해체 업무 추가에 따른 용어 추가 (건축물관리법의 정의 따름)
KDS 41 10 05 : 2021 (건축구조기준 총칙) 4.2.1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따라 구조부재의 설계를 할 때에는 다음 방법에 따른다. (1) 구조부재는 KDS 41 12 00과 KDS 41 17 00에 따른 하중 및 외력을 사용하여 산정한 부재력을 KDS 41 12 00(1.5.1)에 따라 하중계수를 곱하여 조합한 소요강도 중 가장 불	KDS 41 10 05 : 2021 (건축구조기준 총칙) 4.2.1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따라 구조부재의 설계를 할 때에는 다음 방법에 따른다. (1) 구조부재는 KDS 41 12 00과 KDS 41 17 00에 따른 하중 및 외력을 사용하여 산정한 부재력을 <u>KDS 41 12 00(1.7.1)</u>에 따라 하중계수를 곱하여 조합한 <u>소요강도 중</u> 가장 불리한 값으로 설계한다.	[수정] 참조절 오류

개 정 안	검 토 의 건	
	수정안	사 유
리한 값으로 설계한다.		
KDS 41 10 05 : 2021 (건축구조기준 총칙) 6. 구조안전의 확인 건축구조물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을 확보하고 친환경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하며, 이를 위한 각 단계별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KDS 41 10 05 : 2021 (건축구조기준 총칙) 6. 구조안전의 확인 건축구조물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을 확보하고 친환경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 <u>해체</u>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하며, 이를 위한 각 단계별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관리법 제2조(정의) 및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에서 건축물의 유지·점검·보수·보강 또는 해체 시 건축법 제48조 및 제48조의4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라는 규정에 따라 해체도 구조안전을 확인해야함 [추가] 해체
	KDS 41 10 05 : 2021 (건축구조기준 총칙) <u>6.5 해체 시 구조안전 확인</u> <u>건축물 해체 시 이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책임구조기술자에게 의뢰하는 업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u> <u>(1)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을 포함한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u>	건축물의 해체 관련,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따른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 업무 관련 조항 신설 [신설] 조항신설
KDS 41 10 05 : 2021 (건축구조기준 총칙) 7.1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 책임구조기술자는 건축구조물의 구조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안전진단 등 관련 업무를 각	KDS 41 10 05 : 2021 (건축구조기준 총칙) 7.1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 책임구조기술자는 건축구조물의 구조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안전진단, <u>해체</u> 등 관련 업무를 각	[추가] 해체

개 정 안	검 토 의 건	
	수정안	사 유
각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술자로서,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은 건축관련 법령에 따른다.	각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술자로서,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은 건축관련 법령에 따른다.	
KDS 41 10 05 : 2021 (건축구조기준 총칙) 7.2 책임구조기술자의 책무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건축구조물의 구조에 대한 구조설계도서(구조계획서, 구조설계서, 구조설계도 및 구조체공사시방서)의 작성, 시공, 시공상세도서의 구조적합성 검토, 공사단계에서의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구조안전확인, 구조감리 및 안전진단 등은 해당 업무별 책임구조기술자의 책임아래 수행하여야한다.	KDS 41 10 05 : 2021 (건축구조기준 총칙) 7.2 책임구조기술자의 책무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건축구조물의 구조에 대한 구조설계도서(구조계획서, 구조설계서, 구조설계도 및 구조체공사시방서)의 작성, 시공, 시공상세도서의 구조적합성 검토, 공사단계에서의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구조안전확인, 구조감리 및 안전진단, <u>해체계획서의 작성 또는 검토</u> 등은 해당 업무별 책임구조기술자의 책임아래 수행하여야한다.	건축물의 해체 관련,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따른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 업무 항목 추가 <u>[추가] 해체계획서의 작성 또는 검토</u>
KDS 41 10 05 : 2021 (건축구조기준 총칙) 7.3 책임구조기술자의 서명·날인 (1) 구조설계도서와 구조시공상세도서, 구조분야 감리보고서 및 안전진단보고서 등은 해당 업무별 책임구조기술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다.	KDS 41 10 05 : 2021 (건축구조기준 총칙) 7.3 책임구조기술자의 서명·날인 (1) 구조설계도서와 구조시공상세도서, 구조분야 감리보고서 및 안전진단보고서, <u>해체계획서</u> 등은 해당 업무별 책임구조기술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다.	건축물의 해체 관련,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따라 책임구조기술자 서명, 날인 도서 항목에 해체계획서 추가 <u>[추가] 해체계획서</u>
KDS 41 10 10 : 2023 (건축구조기준 구조검사 및 실험) 1.2 용어의 정의	KDS 41 10 10 : 2023 (건축구조기준 구조검사 및 실험) 1.2 용어의 정의	<u>[수정] KDS 41 50 용어정의와 동일하게 수정</u> (본문도 함께 수정 필요)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사 유
경골구조: 큰 경간의 구조를 간략하게 비교적 단면이 작은 부재 여럿을 사용하여 구성한 목구조	경골 목 구조: 큰 경간의 구조를 간략하게 비교적 단면이 작은 부재 여럿을 사용하여 구성한 목구조	
KDS 41 12 00 : 2021 (건축물 설계하중) 1.6 설계하중의 종류 건축구조물의 구조설계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은 다음과 같으며, 각 설계하중에 대한 사항은 2부터 11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KDS 41 12 00 : 2021 (건축물 설계하중) 1.6 설계하중의 종류 건축구조물의 구조설계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은 다음과 같으며, 각 설계하중에 대한 사항은 2부터 12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2 홍수하중 누락됨
KDS 41 30 10 : 2021 (강구조 설계기준) 1.6.3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1) 반응수정계수 R이 3 이하인 강구조물의 설계, 제작 및 설치에 이 기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KDS 41 17 00의 일반설계 요구사항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이 기준 4.12의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KDS 41 30 10 : 2021 (강구조 설계기준) 1.6.3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1) 반응수정계수 R이 3 이하인 강구조물의 설계, 제작 및 설치에 이 기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KDS 41 17 00의 일반설계 요구사항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이 기준 4.13의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참조절 오류
KDS 41 30 20 : 2021 (강합성구조 설계기준) 4.1.8.3 합성구성요소 내부에 사용하는 강재앵커 3) 전단과 인장의 조합력을 받는 스티드앵커 강도 (중략) 소요인장강도 Q_{rt}와 소요전단강도 Q_{rv}는 KDS 41 30 10(1.5.1)에 따른 하중조합에서 요구하는 강도이다. 강도저항계수는 다음	KDS 41 30 20 : 2021 (강합성구조 설계기준) 4.1.8.3 합성구성요소 내부에 사용하는 강재앵커 3) 전단과 인장의 조합력을 받는 스티드앵커 강도 (중략) 소요인장강도 Q_{rt}와 소요전단강도 Q_{rv}는 KDS 41 30 10(1.6.1)에 따른 하중조합에서 요구하는 강도이다. 강도저항계수는 다음과 같다.	참조절 오류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사 유
과 같다.		

「건축구조기준」 개정(안) 검토의견

검토자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고현석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사 유
KDS 41 10 05 : 2021 (건축구조기준 총칙) 3.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 3.1 중요도(특) (2) 연면적 1,000㎡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데이터센터 3.2 중요도(1) (2) 연면적 1,000㎡미만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데이터센터	KDS 41 10 05 : 2021 (건축구조기준 총칙) 3.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 3.1 중요도(특) (2) 연면적 1,000㎡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 전화국, 데이터센터 3.2 중요도(1) (2) 연면적 1,000㎡미만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 전화국,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센터	“첨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 항관련)” 내용과 내용을 합치시킴으로써 연면적 1,000㎡이상의 민간 데이터센터 에 대한 중요도를 명확히 하기 위함
<첨부>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사 유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개정 2021. 12. 9.>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

중요도	특	1	2	3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1. 연면적 1,000㎡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1. 연면적 1,000㎡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센터 2. 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운동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택배송시설은 제외함) 3.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4. 5층 이상인 숙박시설·오피스텔·기숙사·아파트·교정시설 5. 학교 6.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1. 중요도(특), (1), (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1.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2. 가설구조물
중요도계수	1.5	1.2	1.0	1.0

비고: 중요도(특)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축이나 운영에 관한 권한

「건축구조기준」 개정(안) 검토의견

검토자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정지훈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사 유
KDS 41 17 00 : 2019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6.6.2 변형의 적합성 ~고려하는 방향의 지진력저항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구조요소는 7.2.7.1에 따라 결정된 설계층간변위 Δ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멘트와 전단력뿐만 아니라 수직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연성능력을 발휘하도록 설계한다. 허용응력설계법을 사용할 경우, Δ는 하중계수 0.7을 곱하지 않은 지진력에 대해 산정한다. 고려하는 방향의 지진력저항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부재에 발생하는 모멘트와 전단력은 인접한 강한 구조 및 비구조요소에 의한 강성 증가효과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KDS 41 17 00 : 2019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6.6.2 변형의 적합성 ~고려하는 방향의 지진력저항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구조요소는 7.2.7.1에 따라 결정된 설계층간변위 Δ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멘트와 전단력뿐만 아니라 수직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연성능력을 발휘하도록 설계한다. 허용응력설계법을 사용할 경우, Δ는 하중계수 0.7을 곱하지 않은 지진력에 대해 산정한다. 고려하는 방향의 지진력저항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부재에 발생하는 모멘트와 전단력은 인접한 강한 구조 및 비구조요소에 의한 강성 증가효과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단, 철근콘크리트로 구성된 골조에 대해 KDS 14 20 80의 4.2를 따를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변형 적합성 검토는 그 절차가 복잡하여 실무적으로 국내 설계는 KDS 41 17 00 (6.2.3 해설)로 대부분 변형적합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이로 인해 벽체 분담률이 작아 보이는 건축물도 건물골조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내용을 남용하는 것 같습니다. ASCE7 12.12.5에서는 ACI318의 18.14를 준수할 경우 변형의 적합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KDS 14 20 80(4.2)의 경우 ACI 318의 18.14와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기준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잘 활용하면 건물골조시스템의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 실무적에서 다양한 구조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는 활용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개 정 안	검 토 의 건	
	수정안	사 유
		보입니다.
KDS 41 17 00 : 2019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9.3 재료요구사항 중연성도와 고연성도가 요구되는 구조형식의 구조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을 따른다. 9.3.2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보와 기둥의 소성한지구간에서는 겹침이음과 용접이음이 허용되지 않는다.	KDS 41 17 00 : 2019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9.3 재료요구사항 중연성도와 고연성도가 요구되는 구조형식의 구조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을 따른다. 9.3.2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고연성도의 경우, 보와 기둥의 소성한지구간에서는 겹침이음과 용접이음이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준의 내용을 보면 중연성도는 중간모멘트골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모멘트골조의 소성한지구간에서 겹침이음을 금지하는 조항은 미국 기준인 ACI에서도 나타나지 않으며, 국내 실험결과에서도 겹침이음 시 구조적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참조). 해당 기준으로 인해 시공시 어려움이 많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소성한지 구간에서 겹침이음된 RC기둥의 내진성능」, 김철구외,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구조계 제31권 제12호(통권326호) 2015년 12월

「건축구조기준」 개정(안) 검토의견

검토자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박대영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사 유
KDS 41 10 05 : 2021 (건축구조기준 총칙) 1.4 기준의 구성 KDS 41 40 00 건축물 합성구조 설계기준	KDS 41 10 05 : 2021 (건축구조기준 총칙) 1.4 기준의 구성 KDS 41 40 00 강-콘크리트합성구조 설계기준	·기준 명칭 오류
KDS 41 10 05 : 2021 (건축구조기준 총칙) 2. 용어의 정의 구조물 : 건축구조물의 뼈대를 이루는 부분으로 구조공학적인 측면에서 건축구조물 등을 일컬을 때 사용	KDS 41 10 05 : 2021 (건축구조기준 총칙) 2. 용어의 정의 구조물 : 건축구조물의 뼈대를 이루는 부분으로 구조공학적인 측면에서 건축구조물 등을 일컬을 때 사용	·용어설명에 설명되는 용어가 포함됨. 문맥상 삭제.
KDS 41 10 05 : 2021 (건축구조기준 총칙) 2. 용어의 정의 내풍공학 전문가 : 내풍설계시 풍동실험 진동평가를 수행할 경우에 제3자 검토를 수행하는 건축구조기술사, 내풍공학 박사학위 소지자, 건축구조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내풍공학 관련 실무 또는 연구 경력이 년 이상인 자	KDS 41 10 05 : 2021 (건축구조기준 총칙) 2. 용어의 정의 내풍공학 전문가 : 내풍설계시 성능설계법 , 풍동실험 진동평가를 수행할 경우에 제3자 검토를 수행하는 건축구조기술사, 내풍공학 박사학위 소지자, 건축구조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내풍공학 관련 실무 또는 연구 경력이 년 이상인 자	[추가] 성능설계법 추가
KDS 41 12 00 : 2021 (건축물 설계하중) 3.4.1 일반사항 총중량 180kN을 초과하는 중량차량이 통행하는 바닥의 활하중은 ‘도로교설계기준’의 활하중	KDS 41 12 00 : 2021 (건축물 설계하중) 3.4.1 일반사항 총중량 180kN을 초과하는 중량차량이 통행하는 바닥의 활하중은 ‘도로교설계기준’의 활하중 규	동일 절(3.4) 내에서 서로 상충되는 문구가 기술되어 있음

개 정 안	검 토 의 건	
	수정안	사 유
중 규정에 따라 산정하며, 충격 및 피로를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4.3 중량차량의 주차장 활하중 총중량이 180kN을 초과하는 중량차량의 주차장 활하중은 3.4.1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충격 및 피로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정에 따라 산정하며, 충격 및 피로를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4.3 중량차량의 주차장 활하중 총중량이 180kN을 초과하는 중량차량의 주차장 활하중은 3.4.1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충격 및 피로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KDS 41 20 00 : 2021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4.3.1 압축부재의 횡철근 KDS 14 20 50 (4.4.2(3)②)을 다음 규정으로 변경한다. ② 띠철근의 수직간격은 축방향 철근지름의 16배 이하, 띠철근이나 철선지름의 48배 이하, 또한 기둥 단면의 최소 치수 의 1/2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200mm보다 좁을 필요는 없다.	KDS 41 20 00 : 2021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4.3.1 압축부재의 횡철근 KDS 14 20 50 (4.4.2(3)②)을 다음 규정으로 변경한다. ② 띠철근의 수직간격은 축방향 철근지름의 16배 이하, 띠철근이나 철선지름의 48배 이하, 또한 기둥 단면의 최소 치수 의 1/2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200mm 미만일 필요는 없다.	문구수정